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원칙
(안): 한국측 제안**

우리는 일본군 성노예 범죄에 대한 일본국가와 관련된 개인들의 국제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실행위원회를 설립하고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합의하였다.

1.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이하 2000년 국제법정)은 국제법의 원칙과 인류의 양심과 인류의 요청에 따라, 아시아 여러 나라의 식민지 지배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쟁을 전후로 하여 자행한 일본군 성노예 범죄에 대한 일본국가의 책임과 범행을 저지른 개인의 형사책임을 밝히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수립된다.

2. 2000년 국제법정은 일본 도쿄에서 2000년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한다.

3. 2000년 국제법정은 다음의 문제를 다룬다:

- 1) 일본국가의 일본군 성노예제도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
- 2) 일본군 성노예제도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자행한 개인들의 국제법상 책임
- 3) 현재까지 진상규명, 배상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본국가의 국제법상 책임
- 4)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일본 외 다른 국가들의 국제법상 의무

4. 2000년 국제법정은 재판부, 검찰단, 피해자로 구성된다. 2000년 국제법정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의 절차와 진행,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5. 2000년 국제법정의 재판부는 피해자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검찰단이 제출하는 일본군 성노예범죄와 관련된 구두 또는 서면의 모든 증거를 심리할 수 있다.

6. 검찰관은 2000년 국제법정 개정 전에 일본의 위법행위와 책임자들의 범죄 사실과 적용법규를 명시한 기소장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다. 이를 위해 검찰관은 각국 피해자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관련자료들을 수집한다. 필요한 경우, 일본군 성노예범죄가 자행된 곳을 방문할 수 있다.

우리는 일본군 성노예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본정부와 개인 또는 그 대리인들이 2000년 국제법정에 출두하여 증거를 제출하고 진술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 국제연합을 포함한 모든 국제기구, 비정부단체, 시민들에게 일본군 성노예제 범죄와 관련된 정보와 문서의 제공을 포함하여 2000년 국제법정의 활동에 필요한 모든 협력과 지원을 호소한다.

여기에서 합의된 기본원칙 이외의 사항은 추가합의 할 수 있다.

초안자: 한국위원회

초안일: 1999.6.24

2000 年日本軍性奴隷制を裁く「女性国際戦犯法廷」の構成と活動に関する原則(案)： 韓国側提案

私たちは日本軍性奴隷犯罪に対する日本国家、および、関連の個人の国際法的責任を問うために、国際実行委員会を設立し、『2000 年日本軍性奴隷国際戦犯法廷』の構成と活動に関する次のような基本原則で合意した。

1. 「2000 年女性国際戦犯法廷」は国際法の原則と人類の良心と人倫の要請に従い、アジア各国の植民地支配とアジア・太平洋地域での戦争の時期に横行した日本軍性奴隷犯罪に対する日本国家の責任と犯行を犯した個人の刑事責任を明らかにし、解決を求めるために設立される。
2. 「女性国際戦犯法廷」は日本の東京で 2000 年 12 月 8 日から 10 日まで開かれる。
3. 「女性国際戦犯法廷」は次の問題を扱う：
 - 1) 日本国家の日本軍性奴隷制度および関連犯罪に対する国際法上の責任
 - 2) 日本軍性奴隷制度と関連した犯罪行為を行った個人の国際法上の責任
 - 3) 現在までの真相究明、賠償、責任者処罰、再発防止のための適切な措置をとらないことに対する日本国家の国際法上の責任。
 - 4) 責任者処罰と再発防止のために、日本以外の国々の国際法上の義務
4. 「女性国際戦犯法廷」は裁判部、検察団、被害者で構成される。「女性国際戦犯法廷」は公正な裁判を保障するために、法廷の手続きと進行、被害者と証人の保護と関連したあらゆる事項を決定する権限を持つ。
5. 「女性国際戦犯法廷」の裁判部は被害者を代表とする人々と検察団が提出する日本軍性奴隷犯罪と関連した、口頭あるいは書面の全ての証拠を審理ができる。
6. 検察官は「女性国際戦犯法廷」の前に、日本の違法行為と責任者たちの犯罪事実と適用法規を明示した起訴状を作成し、裁判部に提出する。このために、検察官は各国の被害者の証言を聴取し、関連資料を収集する。必要な場合、日本軍性奴隷犯罪が横行した場所を訪問できる。

私たちは日本軍性奴隷犯罪について、責任を負う日本政府と個人あるいはその代理人が「女性国際戦犯法廷」に出頭し、証拠を提出し、陳述することを要請する。

私たちはあらゆる国家、国際連合を含むあらゆる国際機構、非政府団体、市民に日本軍性奴隷犯罪と関係のある情報と文書の提供を含み、「女性国際戦犯法廷」の活動に必要なあらゆる協力と支援を訴える。

ここで合意された基本的原則以外の事項は追加することができる。

草案作成者：韓国委員会

草案作成日：1999.6.24